요약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실효성 확보하려면 사후관리 절차 강화 등 10가지 개선방향 실현

저성장시대 특구 지정 증가추세… 운영·관리 실효성 진단 필요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178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는 지역의 특화된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서울시에서 9개 자치구, 4개 분야에서 총 10개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구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특구의 지정 추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새롭게 지정이 되고 있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특구 운영 및 관리의 실효성 측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민간 등 주체별로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구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의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지정될 수 있고 서울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상호 간에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특구의 지정 단계부터 광역적으로 접근해야 할 도시의 관리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고 운영 및 관리 평가에 대한 타당성, 지역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착 및 지원 등 규제특례 적용 이후의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구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 간의 소통은 물론, 특구의 지정 및 운영, 관리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담보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특구에 대한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돌아보고 향후 서울시를 비롯한 각 주체가 개선해 나아가야 할 사항을 모색하였다.

특구 운영실태 한계, 절차적·도시관리적 관점으로 구분해 도출

특구 운영의 실태 조사를 토대로 특구의 지정 전과 지정 후, 지속적인 사업 진행 등 절차적인 관점에서는 특구 지정 및 활용, 특구 운영 및 관리, 특구 평가 및 지원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향후 지역의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도시관리적인 관점에서는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토지이용 및 국계법 규제특례의 사후 영향 부문으로 구분하여 한계를 도출하였다.

지정·활용 측면: 특화사업·규제특례 연계성 적고 유형도 한정

규제특례가 지역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 기준 및 현행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아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특화사업과 규제특례의 연계성 부족으로 특례의 활용도가 저조하여 실 수요자들인 민간사업자의 특화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특구 지정 시, 본래 지역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인정하고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5개(향토자원·유통물류,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의 유형으로 구분되어있어 산업·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각 지역에 골고루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하나의 유형만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판단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운영·관리 측면: 자치구 등 주체 간 소통 적고 사업관리 미흡

현재 특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자치구)에 한정되어 있어서 광역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공조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구조 형성에 한계가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내부에 특구 관련 담당 공무원이 존재하나 그 역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광역적 도시관리 차원에서 의견을 조율해야 할 관련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 자치구와 서울시의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특구의 지정 이후 검증 차원에서 적용조사, 수요조사 등의 서류평가만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민간사업자도 지정 전후로 특구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만 공공과의 지속적인 소통 부족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 내 특구의 지정 이후 실행되는 대부분의 일반적 규제특례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약사법,

의료법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면서 지역 활성화 효과를 거두는 것도 있다. 그러나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행사 시 차량통행금지, 외국인 교원 임용기준 완화 등 일시적이면서 한시적인 사항에 국한되는 것도 많다. 이에 따른 특화사업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집해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의 특화사업 추진 이후의 사업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중단되기도 한다.

평가·지원 측면: 운영성과 측정 쉽지 않고 지속 재원조달 곤란

특구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의 특구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중 특구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결과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구 담당자의 인터뷰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관련 데이터 취득의 어려움이다.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예산 배정이 어려워 담당자가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특구로 지정된 후에 사업을 시행할 때, 초기에는 예산을 확보해 관련된 각종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연속되는 사업이 아닌, 단기간에 완료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서 지속적인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특화사업의 장기적 추진이 어려운 이유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특화사업 추진 및 규제특례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및 국가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아 지속적인 재원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특구계획에서 규제특례의 제안 및 사업추진 내용이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과감한 규제특례가 적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자본의 유치에 한계가 존재하며 지역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소통이 부족하여 특화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어려운 점 또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지정범위·내용: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관련계획과 정합성 부족

서울시 내 특구의 계획 범위를 보면 2030 서울플랜, 생활권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관련 계획의 범위 및 계획 내용과는 연계성이 없이 각 기초자치단체(자치구)에서 필요한 구역이 특구 범위로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되는 특구의 계획 내용을 역으로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려는 자치구도 존재한다. 이는 규제특례법상에서 작성되는 지정신청서 내용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위계획 및 지정하고자 하는 범위의 주변 계획에 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 내용 및 범위의 정합성 측면에서 상호 부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토지이용 규제특례: 부정적 영향 막는 주체 간 심의·협의 소홀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는 일단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의 간척 농지 및 수자원보호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의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토지이용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부영향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정 단계와 지정 이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특구 지정은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광역적이 아닌 국지적 차원에서의 검토 및 심의는 자칫 지역 전체의 도시관리적 측면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시 내 지정된 10개의 특구는 대부분 일반적인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국계법상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사례는 '강서 미라클-메디특구'가 유일하다. 강서구는 특구 지정 이후, 관련 규제특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병원의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병상 수 확보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 관련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특구 지정 신청 시 강서구와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만이 관련 절차를 수행하면서 지역 전체의 도시관리적 차원에 대한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규제특례를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지정 절차에 관한 한계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구 목적 달성 겨냥한 개선방향의 3대 원칙

특구의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절차적인 문제와 도시관리적인 문제의 2가지 관점에서 각각 도출된 세부적인 한계와 과제는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1)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의 강화, 2) 특구의 운영과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의 강화, 3) 특구의 지속적인 유지 및 협조체계의 강화 3개 원칙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구 지정 전부터 사후관리까지 절차 강화하는 4가지 개선방향

특구의 지정 전부터 지정 이후의 관리까지 고려한 관련 절차의 강화 또는 심화 방안에 대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특구계획이 상위계획·주변계획과 맞는지 검토 의무화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범위에서 계획 내용이 상위계획과 주변의 계획에 맞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을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제7조)’과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제10조)’ 등 규제특례법 조항에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여 지정 신청 시 주변 및 광역적 계획 내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과보고서 및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등의 세부 항목에도 포함하여 지정 이후에도 관련 계획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필요 시 특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구의 계획 및 범위가 광역적 차원에서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요구하고 계획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의 사후 관리·지정해제 요건 강화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 적용은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구 지정에 대한

심의 단계에서부터 특구계획 및 특화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검증이 필요하다. 특구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외부의 환경 변화와 지자체의 사정 때문에 특화사업의 진행이 부진한 경우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정단계에서 특구토지이용계획(특구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특례법 제37조) 외에도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정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적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2년에 1회 이상'의 규정에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전환하고 지자체의 '성과보고서'와 같은 시기에 상호 간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특구의 지정 해제에 관해서는 자발적으로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진한 특구에 대한 특구위원회의 역할 및 지정해제 요건의 강화를 통한 심의·의결을 거쳐 과감하게 지정해제를 추진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서울시에는 현재 토지이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은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특구의 지정이 늘어가는 추세로 향후의 도시관리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자치구에서 관련 특구의 추진이 검토되는 시점부터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3) 국계법상 규제특례도 특구 지정 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국계법상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도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와 마찬가지로 향후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을 주기 때문에 특구 지정 전부터 사후 관리까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지정절차의 진행 시 광역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체계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특례법 제5조)'의 조항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관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특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의 심의(특례법 제32조)'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및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서 특구 지정 이후 관련 조례(특례법 제12조)를 제정 시, 도시관리적인 문제에 대해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특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후 추진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특화사업의 필요에 따른 용적률·건폐율 완화 이후 특화사업 및 관련 용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용도변경 이력 관리 등 이행담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축 인허가와 연계한 용도

관리 방안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후에 관련 사항의 도입을 이행하지 않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환수방안과 법률적 제재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규제특례 절차는 일반적 사항·도시관리적 사항으로 이원화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와 국계법상 건폐율·용적률의 완화 적용에 대하여 지정 초기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심의 및 관련 절차의 강화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그러나 도시관리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반적인 규제특례까지 강화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두 규제특례에 대한 절차를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규제특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절차를 추진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내용을 추가로 마련하는 정도로 진행한다. 하지만 현행 일반적 규제특례로 분류되어있는 국계법상의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와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함께 도시관리적 차원에서의 규제특례로 특례법을 개정하여 관련 심의와 각종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구 실효적 운영·원활한 특화사업 추진 목적의 3가지 개선방향

특구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원활한 특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1) 민간제안 활성화·유형 다양화로 규제특례의 실효성 높여

실수요자의 규제특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된 특화사업자인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에도 각종 지원을 하여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임대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구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임대료에 대한 혜택(동결 또는 감면), 적극적인 홍보의 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에서는 '민간기업 등의 특구계획의 제안(특례법 제4조2)'에 따라 민간기업이 먼저 특구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우호적인 협의의 진행을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구 지정 유형의 한계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 및 가치를 파악하여 각기 다른 특구의 유형이 동일 지역에 복합

지정되어 다양한 지역의 수요(Needs)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특구의 유형 및 형태를 세분화하여 관련 규제특례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업주체 간 연계 다각화로 사업의 지속 추진 재원 확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재원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사업추진 구조에서는 특화사업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비교적 재정상태가 양호한 광역자치단체(서울시)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역 내에서 광역경제권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또는 현안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각 주체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이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지정단계에서부터 광역자치단체와 '공동특구(특례법 제4조, 제13조)'로 지정신청을 하여, 해당 특화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특례법 14조)'에서 특구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조언 및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또는 '관련 자치단체 및 기관과 연계' 등으로 의무화하여 상시 연계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민간사업자가 원활한 사업 가능하도록 특구별 맞춤형 지원

민간사업자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정 단계에서부터 지정 이후까지 특구별 맞춤형으로 특례 및 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수요조사(특례법 제48조)'를 통해서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공공에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특례법 14조)'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속적인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특례 활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사성 규제보다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의 유치가 가능한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사례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또는 총합특구, 특히 현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활성화를 통하여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특구제도와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구 지속적 유지 위한 주체 간 협력 강화 포석 3가지 개선방향

특구의 지속적인 유지 및 운영과 관련된 각 주체 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1) 특구 활성화 위해 관련 4자 주체·행정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특구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는 특구에 관련된 4자(기초, 광역, 중앙, 민간)의 주체와 관련 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이 또한 필요에 따라 특구 지정 초기부터 공동특구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특례법 14조)'에서도 '원활한 특구의 운영·관리를 위한 협의체의 구성' 내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 또는 의무화하여 지속적인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민간의 지속 소통·모니터링체계 마련

특구의 지정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는 곳도 있으나, 행사성 규제에 대한 일시적이면서도 한시적인 사항에 국한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사업자는 특구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영업에 관한 전망 및 개선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의 진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과 모니터링을 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및 중재 방안 등을 도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규제적용에 대한 조사(특례법 제48조)' 및 '성과보고(특례법 제47조)' 외에 제3의 공공 또는 민간의 연구기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성과분석은 전문가에 의뢰 가능해야

특구의 운영 성과 보고서에 대해 더 명확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중 정보제공(특례법 제14조 2항)'에 대한 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 후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특례법 제47조의 3)'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앞서 기술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과 연동하여 지속적인 개선사항에 대한 발굴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관련주체 공조·전문가 협조체계, 경제적 지원, 정책 지속발굴 필요

앞서 제시한 10개의 개선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체계적인 측면, 경제적인 지원 측면,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조치 측면에서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첫째, 조직체계적인 측면에서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현 국내의 상황을 볼 때 쇠퇴하는 도시의 재생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도 특구의 지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시한 특구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소관 관청인 중소기업청과 입안하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 두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가 공조 체제를 마련하고 도시계획, 경제, 사회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조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적인 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일부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자립이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민간기업 또한 장기간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신규사업 투자에 대한 위축 심리가 작용하여 특구가 지정되더라도 특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특례 적용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업의 손실 방지 및 이윤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소관 관청인 중소기업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특구별 유형 및 규모에 맞는 세제 및 재정과 금융상의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조치 측면에서는 특구가 국가의 성장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TFT를 구성하여 특구 관련 정책의 구체적 개선 및 강화 방안을 전략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도 현행 특구지역에 대하여 서울연구원이나 자치구 등과 함께 지속적인 운영 모니터링을 하여 사업의 진행이 미흡한 지역 또는 신규 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는 지역의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과 전문가, 주민, 기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위원회(가칭)' 등을 설치하여 이 위원회가 특구의 지정, 운영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